

국내 핀수영 규정

(2014.12)

목 차

1. 핀수영의 정의	2
2. 기술적인사항	2
3. 국내경기대회	7
4. 수영장 시설 규정	8
5. 자동 순위 장치	9
6. 자동전자 계시장치의 특징	10
7. 자연수역/ 장거리 핀수영	11
8. 경기절차	12
9. 심판 위원회와 경기진행요원	15
10. 핀수영 기록	19
11. 부 록	21

1. 정의

핀수영은 모노핀 또는 짝 핀을 착용하고 어떠한 장치의 도움 없이 단지 근육의 힘만으로 수표면 또는 수중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호흡 장비를 가지고 행하는 수중 경기는 단지 압축된 공기를 이용하는 잠수 장비만이 허용된다.

2. 기술적인 사항

2.1 : 연령그룹, 장비와 제한사항

2.1.1 연령 : 선수의 나이는 현 년도에서 출생 년도를 뺀 것으로 한다.

2.1.2 종별구분은 다음과 같다.

a)등록선수 : 초, 중, 고, 대학, 일반부

b)비등록선수 : 대학2부, 동호인부

c)동호인부의 연령 제한은 아래와 같다.

일반 1부 : 20 - 29세, 일반 2부 : 30 - 39세,

일반 3부 : 40 - 49세, 일반4부 : 50세이상

이후의 그룹은 10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2.1.3 수영장 경기는 남, 여 개인 및 단체, 계영으로 개최될 수 있다.

2.1.3.1 무호흡 잠영 경기의 최대 거리는 50m이다.

2.1.3.2 청소년 그룹에 대한 종목 및 거리 제한은

a)그룹 B : 제한 없음

b)그룹 C : 호흡장비를 가지고 하는 잠영경기는 하지 않는다.

무호흡 잠영 경기의 최대거리는 25m이다.

2.1.4 자연수면(Open Water) : 선수의 안전이 보장된 조건에서는 거리에 제한 없다.

2.1.4.1 그룹 C의 최대 거리는 1.5KM이다.

2.2 영법

2.2.1 표면 핀수영(SF)

2.2.1.1 영법은 자유이다.

2.2.1.2 잠영은 출발과 각 반환시 15m내에서만 허용된다. 스노클 혹은 영자의 머리가 15m 라인 이전에 반드시 수면 위로 나와 있어야 한다

2.2.1.3 15m 지역 밖에서는 항상 신체 또는 장비의 일부분이 수면 위로 나와 있어야 한다.

2.2.1.4 표면 경기와 무호흡 잠영 경기를 구분하기 위해 모든 선수들을 모든 거리에서 스노클을 착용하여야 한다.

2.2.2 무호흡 잠영(AP)

2.2.2.1 무호흡 잠영은 수영장(실내 또는 옥외)에서만 허용된다. 심판은 잘 보이는 위치에서 선수의 움직임을 주시 할 수 있어야 한다.

2.2.2.2 스노클은 사용할 수 없다.

2.2.2.3 영법은 자유이다.

2.2.2.4 무호흡 잠영시 선수의 얼굴은 전체 거리에 걸쳐 잠겨 있어야 한다.

2.2.2.5 자동전자 계시장치가 사용된다면 선수는 골인점 터치패드를 터치해야 한다.

2.2.2.6 무호흡 잠영 50M 경기를 25M의 수영장에서 할 경우에 선수는 반환시 신체의 일부나 핀으로 벽을 터치해야 한다.

2.2.3 호흡 잠영(IM)

- 2.2.3.1 압축공기 호흡장비를 가지고 수중으로 수영하는 경기로 영법은 자유이다.
- 2.2.3.2 사용되는 장비를 나르는 방식은 자유이다.
- 2.2.3.3 경기중 장비를 버리거나 교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2.2.3.4 선수의 얼굴이 전체 거리에서 물에 잠겨 있어야 한다.
- 2.2.3.5 만약 자동전자계시장치가 사용된다면, 선수는 골인점 터치패드를 터치해야 한다.
- 2.2.3.6 호흡 장비로 수영장 벽이나 터치 패드를 건드리면 실격된다.

2.2.4 바이핀(BF)

- 2.2.4.1 영법은 자유영이어야 하며 스노클을 착용하여야 한다.(초등부, 동호인 제외)
- 2.2.4.2 접영은 출발과 각 반환시 15m내에서만 허용된다.
- 2.2.4.3 잠영은 출발과 각 반환시 15m내에서만 허용된다. 스노클 혹은 영자의 머리가 15m라인 이전에 반드시 수면 밖으로 나와야 한다.
- 2.2.4.4 출발을 위해 출발대위에 선수의 핀이 수평이어야 한다.

2.2.5 장거리 핀수영

안전과 보안을 위해 장거리대회에서 선수는 잠영을 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경기중에 선수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영법심판은 두 번까지 옐로카드를 보여주며, 잠영이 세 번 반복되었을 경우 레드카드를 보여주며 실격처리 한다.(이는 대회별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3 장비와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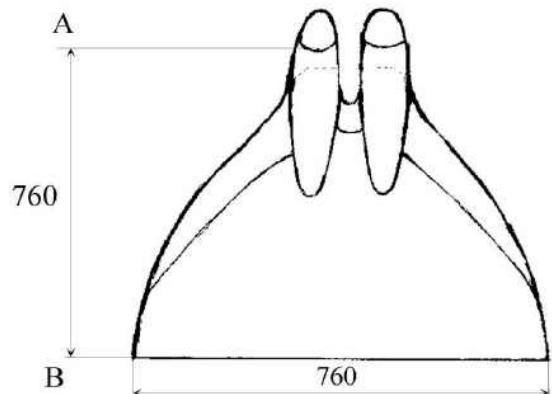
2.3.1 수영장 또는 자연수면 경기에서 SF, AP, IM 종목에서 허용되는 장비

2.3.1.1 핀은 판과 부착된 신발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2.3.1.2 짝핀의 경우 재질과 규격에 제한이 있다.

2.3.1.3 모노핀 : 모든 종류의 모노핀은 다음의 것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 a)재질에 제한이 없다.
- b)모노핀은 부력을 가질수도 있다.
- c)모노핀 최대 규격은 폭 760mm, 길이 760mm, 높이 150mm
- d)폭은 왼쪽과 오른쪽 면 사이의 길이
- e)길이는 그림의 A와 B지점까지 측정한다.
- f)높이는 바닥부터 측정해서 150mm가 넘지 않아야 한다.
- g)발판에 스프링 등 다른 고안품이 사용되어 선수에게 어떠한 기능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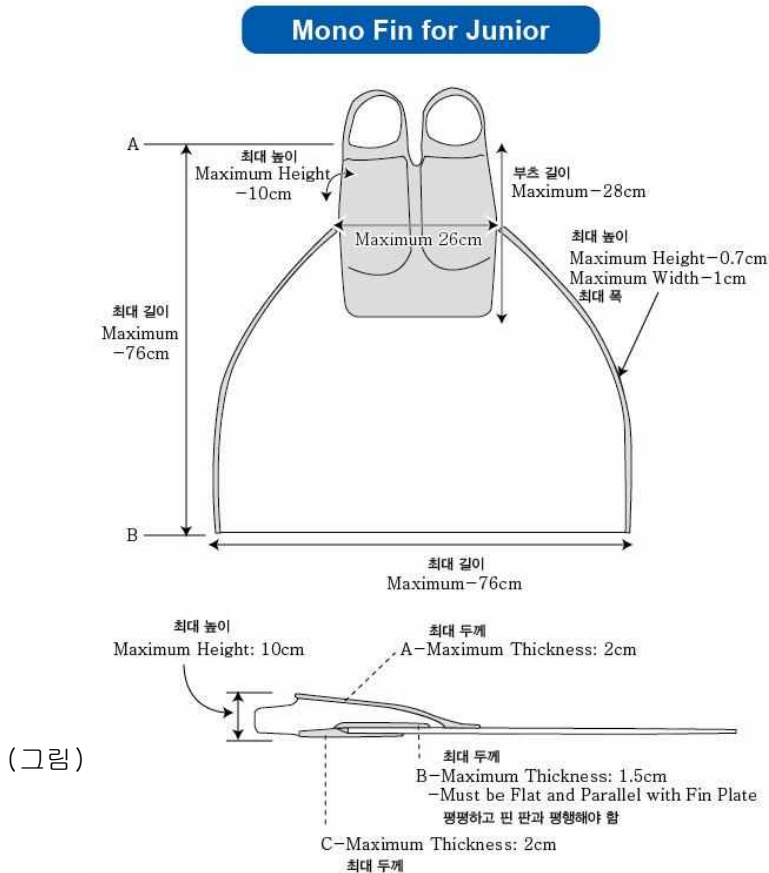
h) 발판은 출발대에서 선수에게 안정성을 주어야 함.

l) 핀과 모노핀 바닥에 철 고정물 사용을 제한하며, 보호를 위해 이를 충분히 감싼 경우는 예외로 한다.

2.3.2 학생부의 모노핀

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핀수영 모노핀 경기에서 학생선수(중, 남고)는 아래의 규격에 맞는 모노핀을 사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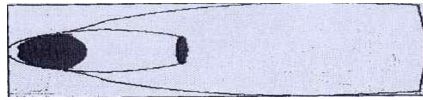
- a) 재질에 제한이 없다.
- b) 모노핀은 부력을 가질 수 있다.
- c) 모노핀 최대 규격은 폭 76cm, 길이 76cm, 높이 10cm
- d) 폭은 왼쪽과 오른쪽 면 사이의 길이
- e) 길이는 그림의 A와 B지점까지 측정한다.
- f) 높이는 바닥부터 측정해서 10cm가 넘지 않아야 한다.
- g) 신발은 폭 26cm, 길이 28cm, 높이 10cm 이내
- h) 핀의 날개 보호용 커버는 폭 1cm, 높이 0.7cm 이내
- l) 핀의 바닥판의 제한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2.3.3 짝핀 : 모든 종류의 짝핀은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 1) 재 질 : -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EVA, 우레탄, 천연고무 등으로 만들어진 핀 사용
- FRP로된 핀은 사용 금지.
- 2) 규 격 : 최대크기(길이675mm, 폭 230mm)

- 신발형 길이



- 뒤꿈치 끈이 있는형 길이



- 3) 시장에서 대량공급되어 통용되는 핀만 사용가능.
- 4) 특별히 협회에서 규정하는 핀은 사용불가.

2.3.3.1 핀의 효율을 높이는 어떠한 부착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2.3.3.2 핀을 발목에 3방향(핀, 발목의 앞뒤)으로 고정하기 위해 고정밴드를 사용할수 있으며, 이 밴드는 시장에서 통용되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그림 5a)와 같이 a 높이의 네오플렌 신발/부츠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림 5b)와 같이 발 끝에 네오플렌 혹은 플라스틱 제질의 보호대는 허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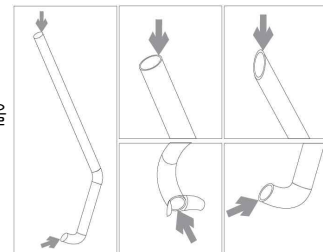


2.3.4 기타장비

2.3.4.1 고글 또는 마스크는 눈을 보호하고 수중시야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2.3.4.2 스노클은 덮개없이 호흡만을 위해 사용한다.

동근관 부분의 내경은 최소 15mm 최대 23mm 이내
총 길이는 43cm -48cm까지 허용된다. 스노클 끝은 비스듬히
자르거나 둥글게 퍼지게 할 수 있으나, 그 길이는 가장 끝점을
측정한다. 스노클의 길이는 반드시 스노클 내부로 측정되어야
한다.



2.3.4.3 고글, 마스크, 스노클은 위에서 언급한 기능 이상의
다른 목적을 지닌 부착물을 지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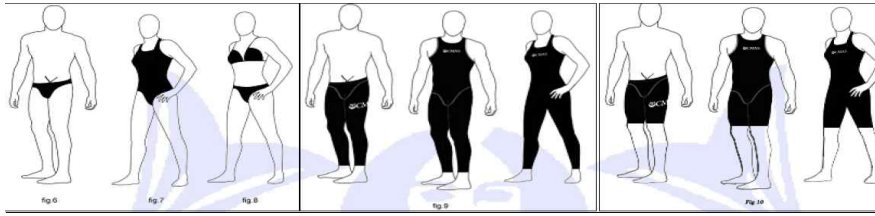
2.3.4.4 호흡 장비를 가지고 하는 잠영 경기 :

- a) 산소함량을 높이지 않은 압축된 공기만이 허용된다.
- b) 수영장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기통의 최소 부피는 0.4리터이다.
- c) 공기통에 최대 충전 압력은 200bars(20MPa)을 초과할 수 없다.
- d) 밑바닥이 평평한 공기통의 경우 그 바닥에 동근 뚜껑을 끼울수 있고 그 동근 바닥 부분의 높이가 공기통의 반지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 e) 모든 공기통은 본 협회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내에서만 허용된다.
- f) 모든 공기통은 경기 전 장비검사에서 빈 공기통이어야 한다.

2.3.4.5. 수영복

a) 선수는 도덕이나 예의에 위배되지 않는 운동복을 착용해야 한다. 남자 수영복은 짧은 트렁크 (fig. 6), 여자수영복은 일반 원피스(fig. 7), 투피스(fig. 8). 경기수영복은 전신의 경우(fig. 9).

반신 수영복은(fig. 10)이며 CMAS로고가 있는 공인된 수영복이어야 한다. 수영복은 선수의 부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단 하나의 수영복만 착용 가능하다.



b) 수영복은 면, 나일론, 라이크라,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또는 그와 유사한 섬유로 직조된 원단으로 사용한 것만 허용되며, 저항을 줄이기 위해 합성고무 또는 우레탄 등으로 코팅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c) 하나 혹은 두 개의 수영모 착용이 가능하다.

d) 보온용 네오플렌 슈트는 단지 개방수역 경기에만 허용된다. (바지 혹은 상의, 원피스나 투피스) 긴 가운이나 스커트(수영자의 표면을 늘리수 있는 것들)는 허용 안됨, 부력이 있는 어떠한 기타장비도 착용 불가.

e) 자연수면의 경기에서 필요시 협회는 보호복 착용을 요구할 수 있다.

▶ 바다에서 행하는 경기대회에서는 선수안전을 위해 체온유지와 피부보호 기능이 있는 보호복을 요구할 수 있다.

▶ 보호복의 형태는 튜닉(반팔+반바지) 이상으로 몸을 보호해야 하고, 체온과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보호복의 형태는 튜닉 A이상으로 몸을 보호해야 한다.

▶ 수영저항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우레탄 또는 고무 등으로 코팅된 원단은 사용금지.

(보호복의 예)



(튜닉A)



(튜닉B)



(전신슈트)

2.3.5 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 핀이나 공기통에 광고물 부착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스노클은 심판의 판정에 필수적인 장비이므로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지 않는다. 선수의 운동복에는 광고물 부착이 허용된다. 경기의 의전 행사에는 그들의 소속을 대표하는 공식 복장으로 참석해야 한다.

2.3.6 선수가 규정에 위배된 장비를 가지고 출발대에 설수 없다. 만약 경기후 이것이 적발된 경우 실격처리 된다.

2.3.7 새로운 장비는 경기대회 전 본 협회 경기위원회의 동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사용될 수 있다.

2.3.8 금지된 기타장비

2.3.8.1 전자계시장치 외 어떠한 것도 출발대위에 놓여서는 안되며, 선수도 출발대 위에 아무것도 놓아서는 안된다.

2.3.8.2 시계 혹은 비슷한 장비를 경기대회에 지참할수 없다(수영장 경기)

2.3.8.3 팔 안쪽으로 어떠한 보호장치를 둘수 없다(스노클의 머리 지지대 부분). 이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3. 국내경기대회

3.1 대회의 구분

3.1.1 두종류로 구분

- 수영장 대회
- 자연수면 혹은 장거리대회

3.1.2 선수권대회와 일반대회

- 전국학생핀수영선수권대회(수영장)
- 이충무공배전국핀수영선수권대회(수영장)
- 인석배 경 전국종별핀수영선수권대회(수영장)
- 회장기전국핀수영선수권대회(수영장)
- 전국체육대회 수중경기(수영장)
- 전국장거리핀수영선수권대회(자연수면)
- 전국수중경기대회(자연수면)
- 기타 핀수영대회

3.2 : 수영장선수권대회

3.2.1 수영장선수권대회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도핑 검사 규정에 따라 도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2.2 선수권대회는 공인된 수영장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3.2.3 심판은 핀수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본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3.2.4 선수의 종별은 신분증에 의해 증명된다.

3.2.5 단체종합 순위는 개인 점수표에 따른다.

- 소속팀 선수 전원 1등에서 6등까지의 점수 합계로 계산한다.

등 수	1	2	3	4	5	6
점 수	10	7	4	3	2	1

- 한국, 대회신기록, 계영점수는 배점으로 한다. 점수가 동점일 때 상위 입상이 많은팀 순으로 정한다.

- 소속팀 선수들의 대회 중 불미스러운 행동,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종합시상에서 그 팀을 제외할 수 있다.

3.2.6 수영장선수권대회의 세부규정(종별, 참가종목, 경기일정)은 본 협회 각 선수권대회 규정을 따르며, 전국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육대회 규정을 따른다.

3.3 장거리핀수영선수권대회

- 초등부 1.5km
- 개인경기 3km, 5km, 6km

4.수영장 시설 규정

4.1 본 협회 선수권대회에 이용되는 수영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길이: 50M
- 레인수: 8레인 이상
- 폭 : 최소 21M
- 수심: 최소 1.35M이상 단 전국체전에서는 1.8m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4.2 전자 터치패드가 수영장 출발점 또는 반환점에 설치됐을때, 두 터치 패드 사이의 거리는 50m보다 짧아서는 안된다.

4.3 50m 길이에 관한 허용오차는 +0.03미터, -0.00미터이다(수표면 위 0.3m에서 수심 0.8m까지). 본 협회에서 승인한 기술자나 공식요원이 길이를 확인해야 한다. 전자용 터치패드가 설치된 후에도 허용오차를 위반하면 안된다.

4.4 수영장 양끝 벽은 서로 평행하며 수면과 수직이어야 한다. 벽면은 수심 0.8m 까지 딱딱하고 미끄럽지 않아 선수가 터치하고 밀고 나갈 때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4.5 휴식용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이 것은 수심 1.2m 이상에 위치하며 폭은 10-15cm 정도이다.

4.6 오버플로우 배수구는 수영장 4면에 설치할 수 있다. 만약 이 배수구가 수영장 양 끝면에 있다면 수면 위 0.3m에 터치패드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수구는 창살이나 망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수면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배수조절용 밸브가 있어야 한다.

4.7 각 레인의 폭은 최소 2.5미터이어야 하며 첫레인과 마지막 레인 양쪽밖에 최소 0.2미터 폭의 2개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레인은 최소 8개이어야 한다.

4.8 레인 표시용 로프는 전길이에 걸쳐 설치되어야 하며 수영장 벽 끝에 고리로 깊숙이 고정되어야 한다. 각 레인 표시는 직경 0.05m~0.15m의 부이로 만들어 졌으며 끝에서 끝까지 설치한다. 각 레인 사이에는 하나의 로프만 허용된다. 레인 표시용 로프는 팽팽하게 댕겨야 한다.

4.9 출발대는 스프링보드와 같은 효과가 없이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출발대의 높이는 수면위 0.5m에서 0.75m이다. 출발대의 넓이는 최소 0.5mx 0.5m이어야 하며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최대 경사도는 10° 이하여야 한다. 출발대는 수영장 양 끝에 설치되어야 한다.

4.10 각 출발대는 사면에 잘 보이도록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수영장 출발대에서 수영장을 향해 섰을때 오른쪽이 1번 레인이다.

4.11 수온은 경기 동안 25℃ ~ 28℃로 유지되어야 하며, 수면은 일정한 높이로 유지되어야 하며, 물 흐름이 없어야 한다. 정수를 위한 물 순환이 물의 흐름이나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국내 위생규정에 따라 경기 중 정수 순환장치를 가동 할 수도 있다.

4.12 레인 표시는 수영장 가장자리와 대조적인 색이 되도록 짙은 색을 사용한다. 수

영장 바닥, 레인 한 가운데의 레인 표시선은 50m의 수영장에서 46m 길이로, 폭이 최소 0.2m 최대 0.3m 크기로 표시한다. 각 레인 표시선은 수영장 양끝에서 2m 전에 끝나야 하고 그 끝에는 표시선과 같은 폭으로 1m 길이의 수직선을 긋는다. 골인선은 레인 가운데에 레인 표시선과 같은 폭으로 양쪽 끝벽이나 전자 터치패드 위에 표시한다. 골인선은 수영장 끝에서 바닥까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 골인선 수심 0.3m에 이 골인선과 수직으로 가로질러, 0.5m길이의 수직선을, 이 수직선의 중앙이 수심 0.3m에 위치하도록 표시한다.

4.13 15m 부정 출발 라인은 10-20cm의 폭으로 수영장 양끝 바닥에서 15m의 거리에 고정되며, 수면 위로는 같은 위치에 높이 1.0m 위에 수영장을 가로질러 로프를 매달아야 한다.

4.14 모든 실내수영장은 금연지역이다.

5. 자동 순위 장치

5.1 완전자동순위 장치나 반자동 순위장치로 선수의 시간과 순위를 기록한다.

순위나 시간은 100/1초까지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 기계의 순위나 시간이 계시원보다 우선한다. 설치된 장비는 선수의 출발과 턴 동작, 배수구의 기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5.2 1000/1초까지 재는 장비를 사용할 때 1000분의 1초에 해당하는 숫자는 기록과 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100/1초까지 같은 기록을 가진 모든 선수는 동일한 순위가 주어진다. 100/1초까지 기록되는 전자 계시장치를 사용한 결과는 등록된다.

5.3 심판에 의해 측정된 모든 시간은 수동시간으로 간주된다. 수동계시에는 한 레인 당 3명이 있어야 한다. 모든 계시 시간은 주심에 의해 확인되고 승인된다. 수동 시간은 100/1초 까지 기록된다. 만약 자동기계장치가 없을 경우 공식적인 수동시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3명중 2명의 계시원이 동일한 한 기록이고 한 사람의 기록이 다를 경우 두 사람의 같은 기록이 공식 기록이 된다.
- 만약 세 사람의 계시가 다를 경우의 공식 기록은 중간 기록으로 한다.
- 두 계시원에 의해 기록된 시간이면 두 기록 중에 긴 시간이 공식 기록이 된다.

5.4 만약 경기 중에 자동 장치가 오류를 일으켜 한 명 또는 그 이상 선수의 기록이나 순위가 기록되지 못한 경우, 심판에 의해 결정된 순위와 시간 그리고 장비에 의해 정해진 순위와 기록 모두를 기록 할 필요가 있다.

5.5 공식적인 순위의 결정을 위해서는 자동장치에 의해 측정된 시간이 공식기록으로 간주된다. 만약 장비에 결함이 있다면, 선수의 공식 기록은 수동 계시에 의해 결정되고 이 경우는 “수동시간” 이란 표시를 한다.

5.6 자동순위장치에 의해 결정된 선수들의 순위는 변경될 수 없다. 만약 전자장비에 의해 시간은 측정되고 순위는 주어지지 않았다면, 전자장비에 의해 측정된 선수들의 기록을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만약 장비가 순위와 시간을 알릴 수 없다면, 심판원에 의해 결정된다.

5.7 모든 예선 경기에서의 순위 결정은 장비에 의한 시간들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만약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들이 장비에 의해 정해진 순위가 모두 동일하다면 그 경기에 착순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동계시 기록을 가진 선수의 순위는 모든 수동시간들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5.8 출발대의 전자 계시장치 : 각 경기전에 계영경기시 올바른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10/100 까지 계산). 심판장은 계영경기 후에 이 규정에 따라 계영경기의 정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9 계시장치와 순위 장치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a) 터치패드를 이용한 전자계시장치(완전 자동)
- b) 심판이 조작하는 전자계시장치(반 자동)
- c) 디지털 시계(세명의 계시원이 있을경우)
- d) 착순 심판에 의한 순위

5.9.2 자동전자 계시장치의 결과가 절대적으로 우선한다. 만약 전자계시장치가 자동모드에서 작동이 안될 경우 반자동에 의한 기록이 인정된다.

5.9.3 만약 전자 계시장치가 없으면 3명의 계시원에 의해 측정된 시간에 의해 순위가 결정된다 (착순 심판의 순위보다 우선한다).

5.9.4 만약 한레인당 3개 미만의 스톱워치가 사용되었다면 착순 심판의 순위가 우선한다. 이 경우 만약 계시원의 시간이 착순심판의 결정과 맞지 않거나, 2위의 시간이 1위보다 더 좋은 기록이 나온 경우 두선수의 평균시간을 두선수에게 부여한다.

6. 자동전자 계시장치의 특징

6.1 다음은 장비에 대한 규정이다

- a) 출발심판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한다.
- b) 가능하면 수영장 바닥에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c) 각 레인의 시간과 순위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 d) 선수들의 시간을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6.2 출발에 필요한 보조 장비

- a) 출발장치에는 구두 명령을 위한 마이크가 설치되어야 한다.
- b) 만약 공기총으로 출발을 알린다면, 변환기(Transducer)를 구비해야 한다.
- c) 마이크와 변환기 두 가지 모두 각각 출발대 스피커에 연결되어 모든 선수가 동시에 신호와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6.3 자동계시를 위한 전자 접촉판(터치패드)

- a) 터치패드의 최소 규격은 폭 2.4m, 높이 0.9m이다(240cm x 90cm). 그리고 터치패드의 최대 두께는 0.01m이다. 수면위 0.3m 수중으로 0.6m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레인에 설치된 터치패드는 독립적으로 연결되어 개별 조정이 가능하도록 연결되어야 한다. 터치패드의 면은 밝은 색상으로 하며 골인선 표시를 해야 한다.
- b) 골인 터치패드는 레인 중앙에 고정되어야 한다. 경기가 없을 시는 운영자가 제거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해도 된다.
- c) 예민도는 물의 움직임에 의해 작동되어서는 안되며, 손으로 가볍게 터치함으로써 작동 되어야 한다. 터치패드의 윗면도 예민해야 한다.
- d) 터치패드 위의 표시가 기존의 수영장의 표시와 일치해야 한다. 터치패드의 가장 자리는 0.025m 폭의 검정색 띠로 표시한다.
- e) 접촉판의 안전도는 감전의 가능성과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6.4 반자동장치는 골인시 계시원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기록된다.

6.5 자동장치에 필수적인 기본 시설.

- a) 동작중에 재생 가능한 모든 정보의 프린트 기능

- b)전광판
- c)100/1초까지 릴레이의 측정(전자스타팅 블록)
- d)자동 랩 타임 기록
- e)중간시간 판독
- f)컴퓨터 집계기능
- r)실수 접촉의 정정기능
- h)뱃데리 자동 충전 기능

6.6 모든 경기 동안 골인 지점을 잘 볼 수 있도록 한 넓은 시야의 통제실이 있어야 한다. 심판장이 쉽게 통제실과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나 통제실의 안전은 유지되어야 한다.

7.자연수면/ 장거리 핀수영

7.1 강, 호수, 바다와 같은 자연수면에서 개최되는 핀수영 경기는 경계가 표시되어야 한다.

7.2 경기코스는 물흐름과 조류가 적은 곳을 선택된다. 민물이나 바다에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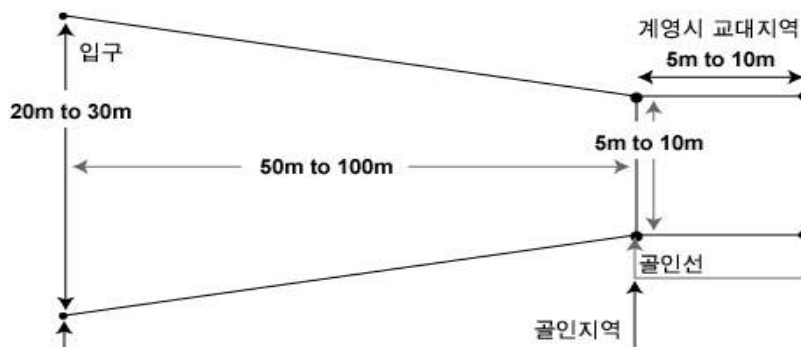
7.3 보온 수영복 없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온은 최소 14℃이다. 수온은 경기 당일 출발 2시간 전에 중간지점 수심 0.4m 에서 측정한다. 만약 수온이 14℃ 이하이면 선수는 네오플렌 수영복을 입어야 한다. 또 주최측은 필요시 보온수영복 착용을 요구할 수 있다.

7.4 모든 턴과 방향 전환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선수권대회의 경우 적어도 15m 이상의 부력을 줄을 전환점 부이에서 골인 방향을 향해 설치해야 한다.

7.5 각 반환점 부이는 선수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하고, 반환 심판을 태운 보트는 각 반환점에 위치해야 하며 선수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7.6 반환점의 부표는 그 자리에 앵커로 확고히 고정시켜 조류나 바람 등에 의해 영향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7.7 골인지역은 다음 그림과 같이 갈때기 모양으로 표시해야 한다.



7.8 계영지역은 골인 갈때기 지역과 다음 선수가 동료들 기다리는 갈때기 끝의 골인지역에 표시된 10m의 특정 구역으로 구성된다.

7.9 골인지역을 지난 후 선수는 신체적인 접촉으로 계영을 전달한다.

7.10 선수가 골인선에 근접했을 때 선수는 골인 갈때기 지역으로 들어가서 골인선을 지나가야 실격되지 않는다.

8. 경기 절차

8.1:수영장 경기

8.1.1 예선의 구성

8.1.1.1 모든 경기에 대한 출발 위치는 다음 방식으로 결정된다.

모든 등록 선수들의 지난 12개월중 가장 좋은 기록을 참가신청서에 기재하여 대회 참가 신청 마감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시간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선수는 가장 느린 기록을 가진 선수로 분류되어 맨 마지막에 배치된다. 동일한 기록을 가진 선수나 기록이 없는 선수들은 추첨으로 배정한다. 선수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레인이 배정된다.

8.1.1.2 시간 순위 결정 경기 (직결선)

레인 배정은 레인이 흠수인 경우 가장 빠른 팀이나 선수가 가운데 레인에 배정된다. 수영장 레인이 짝수인 경우 가장 빠른 선수가 가운데 오른쪽 레인에 배치된다.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을 가진 선수는 가장 빠른 선수의 왼쪽에 위치한다. 나머지 다른 선수들은 순서대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번 갈아가며 배치된다. 50m나 1850m 경기는 오른쪽 왼쪽을 반대로 배치해도 된다.

8.1.1.3 예선이 있는 경기

선수들은 다음과 같이 참가 신청서의 시간에 따라 예선전에 배치된다.

- a)조직위원회는 수영장 레인 수와 참가한 선수 수에 따라 예선 경기를 결정한다.
- b)만약 경기가 한 경기라면 그 경기는 결승전으로 분류되며, 결승 경기 시간에 실시된다.
- c)만약 두 경기가 있다면 가장 빠른 선수는 두 번째 경기에 배치된다. 다음 빠른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 다음 빠른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 다음 빠른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 이런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배치한다.
- d)만약 세 경기가 있다면 가장 빠른 선수가 세 번째 경기에 배치되며, 다음 빠른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 그 다음 빠른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순으로 배치한다.
- e)만약 네 경기가 있다면 그 경기의 마지막 3경기는 위의 규정 d)에 따라 배정하며, 마지막 3번째 경기 이전의 예선 경기에는 다음으로 빠른 선수들을 배치한다, 즉 마지막 3경기 이전에는 느린 선수들이 먼저 경기에 임한다.(부록참조)

8.1.1.4 준결승전 또는 결승전 : 예선전을 거친 준결승전이나 결승전의 레인 배정은 예선전에서 얻어진 시간을 기준으로 위의 절차 c)에 따라 결정된다.

8.1.1.5 선수나 팀이 준결승이나 결승 참가를 기권하면 그 팀 다음 순위의 선수가 대체된다. 준결승이나 결승의 레인배정은 다시 이루어지며, 새로운 명단이 발표된다.

8.1.2 : 출발(수영장 경기)

8.1.2.1 출발전

- a)선수는 출발 대기지역에서 대기실에서 수영모와 고글을 착용해야 한다, 그래서 출발대 가장자리에서는 단지 모노핀만을 착용한다.
- b)코치 그리고 동행한 사람들은 선수를 위한 지역과 경기 지역 내로 들어갈 수 없다.
- c)단지 심판장만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코치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d) 위항에 의거 경기장 내에는 심판, 출전선수 외에는 경기장내 출입할 수 없으며, 출전선수 이해관계인이 출입할 경우 해당성수는 경기 전후에 실격 처리 될 수 있다.

e) 심판장이 선수들을 대기지역에서 출발지점으로 입장시킨 후에 대기실에 늦게 도착한 선수는 경기를 출전할수 없다.

8.1.2.2 출발절차

a) 출발은 출발대에서 해야 한다.

b) 각 경기 시작전 심판장은 선수들이 수영복을 제외한 모든 옷을 벗고 핀 혹은 모노핀 착용을 하기 위하여 짧은 3번의 호각 신호를 보낸다. 그후 1분 30초 이내에 출발한다. 큰 시계가 선수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수영장에 위치한다.

c) 그 다음 긴 호각 신호는 출발대 위에 위치하라는 신호이다. 선수나 심판이 출발 준비되면 주심은 팔을 뻗어 이제 선수는 출발심판의 통제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신호를 출발심판(스타터)에게 보낸다. 출발 신호를 할 때까지 뻗은 팔을 유지한다. 주심의 긴 호각신호에 선수는 출발대 위에 자리 잡는다. 만약 원하는 선수가 있다면 미리 출발대 위에 위치해도 된다.

d) 출발심판이 “차렷” 이라고 말하면 선수들은 동시에 출발 자세를 취하고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선수가 모두 정지해 있을 때 출발심판은 출발 신호를 한다.

e) 첫 부정출발이 일어난 후, 출발신호 전에 출발한 선수들은 모두 실격된다. 만약 실격을 알리기 전에 출발신호가 이루어졌다면 그 경기는 계속되며, 부정 출발 선수는 경기 후 실격처리 한다.

f)만약 출발신호 전에 실격이 알려지면 출발신호는 하지 않으며 출발심판은 선수들을 불러 부정 출발한 선수를 실격시킨 후 출발신호를 한다.

g) 부정출발에 대한 주심 또는 출발 심판이 내린 결정이 최종 결정이다.

8.1.3: 일반 규정

8.1.3.1 800m 이상의 경기에서 심판은 20cm X 30cm 크기의 밝은 색상의 판을 수중에 넣어 남은 거리가 100m 임을 선수에게 알려줘야 한다. 만약 기술적으로 출발대 쪽에서 알려 주는 방법이 불가능 할 경우는 150m가 남았을 때 반환점에서 알려줘도 된다.

8.1.3.2 경기도중 기권하는 선수는 심판의 지시에 따라 물에서 나온다. 선수가 경기를 끝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8.1.3.3 다른 선수의 레인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선수를 방해하는 선수는 실격된다. 만약 이 같은 행동이 고의적이라면 심판은 배심위원회와 소속 팀에 그 문제를 보고해야 한다.

8.1.3.4 모든 경기에서 선수들은 수영장 끝벽에 장비나 신체의 일부분으로 터치해야 한다. [공기통 터치 불가. 2.2.3 참조]

8.1.3.5 계영경기에서 도착한 선수가 수영장 벽을 터치하기 전에 다음 선수의 발이 출발대를 떠나면 실격이다, 그러나 부정출발한 선수가 자기 실수를 알고 돌아와 다시 출발할 경우는 제외이다. 이때 다시 출발대 위로 올라올 필요는 없다.

8.1.3.6 계영경기 출발순서와 선수명단은 정해진 시각 전에 기록실에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출발순서의 변경은 실격이다.

8.1.3.7 계영의 자기부분을 마친 선수는 심판이 수영장을 나오도록 지시할 때까지 자기 레인에 위치한다.(터치패드에서 약1m 떨어져서)

8.1.3.8 계영경기의 마지막 팀이 도착하기 전에 즉 그 경기가 끝나기 전에 경기를 마친 선수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한다.

8.1.3.9 터치패드를 넘어서 출수하는 것은 금지되며, 만약 선수가 이런 방식으로 출수하는 경우 실격처리된다.

8.1.3.10 경기중(SF,AP,IM,BF) 선수가 장비의 일부를(핀,스노클,호흡장비) 떨어뜨린 경우 도착후 실격처리된다.

8.1.4 실격과 기권

8.1.4.1 모든 경기에서 결승 또는 준결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수 또는 팀이 결선 혹은 준결선에 참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자격이 발표된지 30분 이내에 철회 의사를 알려야 한다. 그러면 즉시 차 순위에 있는 선수로 대체된다.

8.1.4.2 결승전에 참가한 선수가 실격 판정을 받았을 때는 그 선수에게 주어졌던 순위는 차 순위 선수에게 주어진다. 실격 판정을 받은 선수 뒤의 모든 선수들은 한 순위씩 올라간다. 만약 실격이 시상식이 끝난 후에 확인되었다면 실격된 선수에게 주어진 시상은 회수되어 차순위 선수에게 돌아간다.

8.1.4.3 8.1.4.1규정의 경우와 감독자 회의에서 이미 제출한 기권을 제외하고 자기 경기에 임의로 출전하지 않은 선수는 그 후 그날의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8.1.5 순위 결정전

8.1.5.1 만약 같은 경기에서 여러 명의 선수들이 동시에 터치했다면 공식기록에 같은 순위가 주어진다. 서로 다른 예선경기에서 100/1까지 동일한 기록이면 동등한 기록으로 인정한다.

8.1.5.2 만약 준결승 및 결승에 나갈 자격 결정에 관한 것이면 순위 결정전으로 정한다.

8.1.5.3 이런 순위 결정전은 포함된 선수의 경기가 끝난 후 적어도 1시간 이상 지나야 경기할 수 있다.

8.1.5.4 선수들의 기록은 같으나 주심이나 착순심판에 의해 순위가 결정 되었으면 이 순위대로 결선 자격이 주어진다.

8.1.5.5 준결승이나 결승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는 선수나 팀은 다음 순위의 선수나 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이 발표된 후 30분 이내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려야 한다.

8.1.5.6 만약 선수가 경기중이나 후에 실격되었다면 공식기록에 실격이라 기록하고 시간과 순위는 기록하지 않는다.

8.1.5.7 만약 계영 경기에서 실격이 있었다면 실격 전까지의 중간 기록은 공식 결과에 기록된다.

8.2 자연수면 장거리 경기

8.2.1 모든 자연수면경기의 출발은 출발신호가 나자마자 선수의 수영이 가능한 충분한 수심이 되는 곳이어야 한다.

8.2.2 출발절차

8.2.2.1 선수들은 경기 진행 방향과 수직선상의 출발선에 위치한다.

8.2.2.2 주심은 출발 15분전, 5분전에 시간을 알려준다. 그후 경기는 출발심판의 출발 신호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8.2.2.3 출발심판은 모든 선수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8.2.2.4 출발심판은 출발 1분전과 30초전을 알린다. 출발전 30초의 알림은 소리와 보일 수 있는 신호로 동시에 신호한다.

8.2.2.5 마지막 10초의 카운팅은 하지 않는다. 출발심판이 출발신호를 직접한다.

8.2.2.6 출발신호는 들을 수 도 있고 볼 수도 있어야 한다.

8.2.3 자연수면 핀수영 경기중 구조용 보트나 안내보트는 선수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기 지역 외곽에 있어야 한다.

9. 심판 위원회와 경기진행요원

9.1 심판위원회

9.1.1 본 협회 심판위원회는 경기규정, 심판장, 심판위원 등을 추천하고, 경기 운영을 한다.

9.1.2 권리와 의무

- a) 경기에 필요한 모든 설치규정을 조사할 의무를 갖는다
- b) 참가자의 선수자격 여부와 신분증 등의 자료를 검토한다.

9.2 심판위원회는 경기진행과 준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수영장 경기의 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주심 1명
- 부주심 1명
- 서기장 1명
- 출발심판 1명
- 출발준비심판(소집) 1명
- 계시원장 1명
- 각레인별 계시원 1명
- 착순심판 2명
- 영법심판 2명~4명
- 반환심판 2-8명
- 통보원 1명
- 시상식 담당 1명
- 의료담당 1명

9.2.1 주심

본 협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선수권대회의 주심은 심판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주심은 모든 심판과 진행요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주심은 심판에게 임무를 주고 선수권대회 특별 규정에 대해 지시한다.

주심 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다.

- a)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서류를 보고 출전종목의 적합성을 점검한다.
- b) 준결승과 결승 리스트의 확인과 대회결과 발표에 책임을 진다.
- c) 본 협회의 규정과 결정을 시행하고 규정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 d) 경기의 완벽을 위해 모든 심판을 배치한다. 주심은 결석한 심판이나 임무 수행능력이 없는 심판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권리와 .필요시 심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 e) 출발심판이 출발명령을 하도록 지시한다. 그전에 그는 모든 심판들이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f)출발 심판과는 별도로 부정출발 여부를 결정한다.

g)대회가 잘 진행될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등을 확인한다.

h)개방수역경기에서 공표된 규정에 따라 경기코스의 정확한 표시를 관장한다.

i)보트의 배치와 안전, 무선통신을 결정한다.

j) 조직위원회는 심판장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그의 요구에 따라 충분한 운영요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k)어떤 내용이건 간에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를 실격시킬 수 있고 그 위반이 다른 임원에 의해 목격되거나 전달받은 경우에도 실격시킬 수 있다. 모든 실격의 결정은 심판장의 권한이다.

9.2.2 부주심

a)주심의 업무를 보조하여 대회진행을 원활하게 한다.

b)주심 유고시 주심을 대신한다.

9.2.3 서기장

a)모든 경기에 필요한 사무재료와 서류들을 준비한다.

b)부서기장을 임명하고 업무를 지시한다.

c)예선과 결선 후 취소된 선수들을 관리하고 신기록 목록을 작성한다.

d)풀사이드 담당요원에게 계시양식을 전달해준다.

e)심판 회의록을 작성한다.

f)경기 종료 후 경기 결과를 준비한다.

g)특별히 마련된 홍보 사무국이 없으면 심판장의 승인 하에 경기의 정보를 언론에 알려 준다.

h) 주심이 넘겨준 순위와 컴퓨터나 시간기록장치에 의한 결과를 검증할 의무가 있다.

i)결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기록을 승인하고 그것들을 대회기록에 삽입한다.

j)착순심판과 주심의 결정이 공식 기록지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k)전문가에 의해 조작되는 전자계시를 협력한다.

l)공식 결과를 관리하고 결과에 서명하고 주심에게 넘긴다.

m)시상식과 결승에 관한 결과를 통보원에게 보낸다.

n)기록실장은 공식 결과를 작성하고 주심에 승인을 거친 후 발표한다.

9.2.4 출발심판

a)출발심판은 주심으로 부터 경기의 통제를 인계 받는 순간부터 출발까지 선수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b)출발심판은 출발을 지연하는 선수, 명령에 불복종하는 선수 또는 출발절차 중에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거나, 또는 고의적인 부정출발을 한선수를 주심에게 보고한다. 오직 주심만이 반 스포츠적인 행동을 하는 선수를 실격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유형의 실격은 부정출발로 간주될 수 없다.

c)출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중도에 방해받은 모든 출발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선수에게 설명되어야 한다.

d)출발심판은 선수가 지나치게 출발을 지연한다고 판단될 때는 출발을 시작할 수 있다.

e)출발신호를 할 때 출발심판의 위치는 출발대 벽으로부터 약 5m전방 수영장 측면에 위치한다. 계시원과 모든 선수는 출발신호를 잘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

f)각 경기 종료 후 수영장에서의 퇴장을 조정한다.

9.2.5 출발준비 심판(소집)

- a) 각 경기를 위해 적절한 시간에 참가자들을 부른다.
- b) 호명에 응하지 않은 선수와 광고 부착물 위반 선수 등에 대해 주심에게 알려야 한다.
- c) 장비가 규정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선수의 출발 준비 상태를 점검한다.
- d) 선수를 출발점으로 유도한다.

9.2.6 계시원장

- a) 각 레인에 계시원을 임명한다. 레인마다 1 - 3명의 계시원을 배치한다. 만약 전자계시 장치가 없다면 두 명의 계시원이 더 필요하다. 두명의 계시원은 경기도중 시계가 작동 되지 않거나 시계가 멈춰버리거나, 또는 어떤 이유든 간에 시간 기록이 안되는 계시원을 대신한다.
- b) 계시원장은 계시원과 함께 사용중인 초시계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 c) 그는 모든 계시원으로부터 계시카드를 회수하고 필요하다면 초시계와 참가자를 확인한다.
- d) 그는 각 선수용 계시카드의 공식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 e) 계시원의 행동을 감독하고 자신도 시간을 측정한다. 각 선수의 시간기록을 서기관에게 넘긴다.

9.2.7 계시원

- a) 담당하고 있는 선수의 시간을 기록한다. 심판장 또는 계시원장에 의해 승인된 초시계를 사용한다.
- b) 계시원들은 출발신호에 따라 시계를 작동시키고 선수들이 골인터치 했을 때 시계를 멈춘다. 경기 종료와 동시에 자신이 계시한 시간을 계시카드에 기록하여 계시원장에게 넘긴다. 이와 동시에 계시원들은 확인 절차상 자신이 계시한 초시계를 보여준다.
- c) 계시원들은 계시원장 또는 주심이 “시계 원위치” 라는 지시 이전에 시계를 제로상태로 되돌려서는 안된다.
- d) 200m 이상의 경기에서 각 100m당 중간 기록을 기록한다.
- e) 턴과 골인을 규정에 맞게 하는지 확인한다.

9.2.8 착순심판

- a) 착순심판은 두명 혹은 그 이상이다.
- b) 수영장 레인과 골인선이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다.
- c) 선수들의 순위를 정하고 직접 기록실로 넘긴다.
- d) 계영 진행도 감독한다.
- e) 동시에 계시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 f) 한레인당 디지털 시계의 수가 3개 미만일때는 착순 심판의 순위가 계시원의 순위보다 우선한다. 착순이 일치할 때는 이결정에 항의할 수 없다. 만약 착순 심판의 결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순위 결정은 주심이 한다. 그리고 공식기록의 시간 옆에 “주심의 결정(CJD)” 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9.2.9 영법심판

- a) 영법심판은 2-4명이다.
- b) 수영장 각 양쪽면에 한명씩 배치된다.
- c) 선수의 영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 d) 선수가 출발과 각 지점 반환 후 잠영이 가능한 15m를 넘어서 잠영하는 것을 감시하고 점검한다.

- e)보조요원들이 감시해도 된다.
- f)서명 카드에 모든 규정위반들을 기록하여 주심에게 즉시 알린다. 이 카드에는 경기종목, 예선 경기 번호와 레인 번호 등을 적는다.

9.2.10 반환심판

- a)주심이 반환심판을 각 레인에 배정한다.
- b)선수가 규정에 맞게 턴을 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 c)카드(반환용지)에 모든 위반사항을 적어 서명 후 보고해야 하며 종목, 레인번호와 상세한 위반행위를 기술한다. 이 카드는 즉시 주심에게 보낸다.

9.2.11 통보원

- a)모든 선수와 팀을 호명하여 관중에게 알리는 임무를 가진다.
- b)전광판이 없을 때는 결과를 방송한다.
- c)경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기록을 알려준다.
- d)모든 실격에 관해 발표할 책임이 있다.

9.2.12 시상담당원

- a)시상식을 위해 사전에 메달, 꽃다발과 다른 부상을 준비한다.
- b)메달 수여식을 조직하고 기와 시상대 등을 준비한다.
- v)공식의전을 위해 선수, 임원, 메달운반자들을 적절한 순서대로 소집한다.

9.2.13 의료담당

- a)의료 담당도 심판위원회에 일원이다.
- b)의료 관리 감독을 한다. 모든 핀수영 경기 시 적어도 한명의 의료 담당은 반드시 참여 해야 한다.
- c)모든 보건 위생과 의학적인 의문사항(위험시 도움, 시간표 작성 및 메뉴 준비시에 도움을 주고, 숙박시설의 위생점검, 건강증명서의 감독, 도핑테스트 등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d)매 경기 시작 전에 의료 장비의 기능을 점검한다.

9.3 심판의 판정 절차 : 심판원은 그들의 판정을 본 협회 핀수영 규정에 의거하여 서로 독립적, 독자적으로 판정을 내릴수 있다.

9.4 기타 세부행동 요령은 본 협회에서 마련한 각 선수권대회별 심판 임무표를 따른다.

9.5 대회 운영

9.5.1 대회장

- a) 본 협회에서 임명한다.
- b) 조직위원회를 대표한다.
- c) 대회동안 대회의 조직관련 업무와 사업의 집행에 책임이 있다.
- d) 심판장과 본 협회 심판위원회와 함께 일을 처리한다.

10. 핀수영 기록

10.1 모든 핀수영 기록은 다음과 같은 종목과 거리에서 남. 여 청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등록된다.

10.1.1 모노핀 표면핀수영 (SF)

- 50m, 100m, 200m, 400m, 800m, 1500m

10.1.2 계영

Relay: 4× 100m, 4× 200m

10.1.3 무호흡잠영(AP) 50m

10.1.4 잠영(IS) - 100m, 400m

10.1.5 짝핀(BF) - 무호흡 잠영50m, 50m, 100m, 200m, 400m, 4x100m, 4x200m

10.2 계영과 구간기록에 따른 규정

10.2.1 계영

- 계영팀의 구성은 동일 팀이어야 한다.
- 1번 영자가 표면 100m와 200m에서 세계 및 대륙선수권대회 기록을 갱신한 경우 이 종목에서 새로운 공식기록이 인정된다.
- 1번 영자가 자기 구간을 규정대로 끝냈으면, 그 후 다른 팀원에 의한 실격이 있어도 그 기록은 취소되지는 않는다.

10.2.2 개인 종목 선수도 경기의 중간 기록에 대해 인준을 요구할 수 있다. 선수는 해당 종목의 전체 거리를 규정대로 끝마쳐야 한다.

10.3 기록의 종류

- 세계신기록 -대륙신기록 -세계선수권대회 신기록
- 대륙선수권대회 신기록 -월드게임신기록 - 한국신기록 - 대회기록

10.4 세계신기록

세계신기록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CMAS의 인준에 따라 등록된다.

10.4.1 수영장의 길이는 국가 연맹에서 검증된 50미터이어야만 한다.

10.4.2 국내의 모든 신기록은 자동전자계시장비에 의한 기록만이 인정된다.

10.4.3 세계신기록 인준 요청은 세계수중연맹이 제시한 양식대로 작성해야 하고 조직위원장과 심판장(주심)이 서명해야 하고, 모든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10.4.4 100분에 1초까지 동일한 기록이 나온 경우는 동일한 기록으로 인정되며 JOINT HOLDER(공동 기록자)라고 칭한다.

10.5 한국신기록 및 대회기록

한국신기록은 본 협회에 공식적인 보고를 통해 본 협회에 의해 공식기록으로 인정한다.

11. 부 록

11. 1 출발위치

레 인	1	2	3	4	5	6	7	8
마지막경기	7	5	3	1	2	4	6	8
네번째 경기	15	13	11	9	10	12	14	16
세번째 경기	23	21	19	17	18	20	22	24
두번째 경기			27	25	26	28		

a) 직결(8.1.1.2) : 수영장 경기 8레인에서 레인배정. 24명의 선수들로 나뉘어 지며 레인 배정은 아래와 같다.(1:가장빠른시간, 2: 두 번째 빠른 시간, 3: 3번째 빠른시간, 다음은 숫자 순서대로)

b) 예선 (8.1.1.3) : 8레인에서 60명의 선수가 출전한 경우 레인배정, 24명의 선수들로 나뉘어 지며 레인 배정은 아래와 같다.(1:가장빠른시간, 2: 두 번째 빠른 시간, 3: 3번째 빠른시간, 다음은 숫자 순서대로)

레인	1	2	3	4	5	6	7	8
마지막경기	19	13	7	1	4	10	16	22
네번째 경기	20	14	8	2	5	11	17	23
세번째 경기	21	15	9	3	6	12	18	24
두번째 경기	43	37	31	25	28	34	40	46
첫경기	44	38	32	26	29	35	41	47
	45	39	33	27	30	36	42	48
	55	53	51	49	50	52	54	56
			59	57	58	60		

11.2 모노핀 규격 재는 공구

